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 기간 중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근거 신설〉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23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 기간 중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근거 신설	2
※ 참고자료	
1. 소상공인 정책자금 현황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병덕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7.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직면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여전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협의를 하도록 함

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 기간 중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근거 신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¹⁾에 따른 방역조치(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시행 기간 중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부가 필요한 지원 및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생략) <u><신설></u>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시행 기간 중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기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상환 유예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분할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관계 금융기관과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상환 유예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분할상환----- ----- -----.
---	--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²⁾할 수 있는데, 그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관련 고시와 내규에도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공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라 한다)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대출금 회수에 따르는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2조(상환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간 내에서 융자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1. 전쟁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규)

제78조(상환기간 연장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대출금 회수에 따르는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 상환기일을 연기함으로써 상환회차별 상환액을 감소시키고, 상환유예는 대출원금 거치기간을 늘림으로써 원금 상환시기를 늦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2.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유예와 별도로 ‘장기분할상환’을 도입하면서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려는 것인 바, 개정안에 따라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되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대출을 받은 자가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 확대에 기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과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하는가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의 대상 범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한편,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행되었던 방역조치 기간³⁾ 중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개정규

3)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2020년 3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된 조치를 시행하다가, 2022년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였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정에 따라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분할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시행 기간 중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활동이 제한되었던 소상공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입법적 조치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기분할상환을 강행하는 규정으로 정상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차주까지 지원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기금 수입 감소에 따라 신규 대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방역조치 기간의 대출 이력을 기준으로 특별지원하는 것은 방역조치 이후 대출받은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별도 조건 없이 경영애로 등 사유와 무관하게 획일적·포괄적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며, 방역조치 이후 대출받은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 및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제한한다는 사유로 개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참고자료】

1

소상공인 정책자금 현황

□ 소상공인정책자금('24년 37,100억원)

구 분	예산(억원)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소 계	37,100	-	-	-
① 일반경영안정자금	11,100	-	-	-
- 일반자금	11,100	업력 무관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0.6%p
② 특별경영안정자금	18,000	-	-	-
- 청년고용연계자금	1,500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4,000	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기준금리 +1.6%p
- 재도전특별자금	2,500	재도전, 재창업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1.6%p
- 긴급경영안정자금	4,500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1억원	고정 2.0%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500	장애인기업	1억원	고정 2.0%
- 대환대출	5,000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의 7%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의 만기연장 등 자체 채무조정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	5천만원	고정 4.5%
③ 성장기반자금	8,000	-	-	-
- 소공인특화자금	5,000	업력 무관 소공인	시설 5억원 운전 1억원	기준금리 +0.6%p
- 혁신성장촉진자금	2,600	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기술도입 소상공인	(혁신형) 시설 10억원 운전 2억원 (일반형) 시설 5억원 운전 1억원	기준금리 +0.4%p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400	민간 투자자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5억원	기준금리 +0.4%p

* '24년 3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3.51%